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90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허종식・김교흥・윤준병

이재관 • 박성준 • 정일영

이훈기 · 김정호 · 유동수

노종면 • 문진석 • 어기구

의원(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행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하나,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산업체 및 폐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제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관련 사업자 및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 및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근로자 고용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신에너지 및 재 생에너지 보급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 생활 향상 및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로 해당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과 대 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진흥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 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관련사업자 및 대체산업을 정의함(안 제2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 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봄(안 제

8조).

- 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 사. 폐지지역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우선 추진하고,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하며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고용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아.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 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우용·관리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자. 대체산업으로 전환하는 관련사업자에게 경영자금 대출상환유예· 기한 연장·이자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
- 차. 폐지지역에 공공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조세·부담금 감면 관련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19조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로 해당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과 대 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진흥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석탄화력발전소"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시설을 말한 다.
-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 계획이 반영된 설비가 위치한 시· 군·구를 말한다.
- 3. "석탄화력발전산업"이란 석탄화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석탄화력발 전연료의 제조·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4.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 나 근무하였던 근로자와 석탄화력발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5. "관련사업자"란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석탄화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 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6. "대체산업"이란 석탄화력발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하 "폐지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 제5조(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등을 위 한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되, 「기후위기 대응을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폐지지역의 인구·환경·산업 등 경제적 피해 규모 산정에 관한 사항
- 2. 폐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체에너지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3. 제6조에 따른 지역활성화 사업 관련 사항
- 4. 폐지지역의 고용안정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 5. 폐지지역의 국토 및 해양의 이용·개발·보전과 관광자원의 개발 및 농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6. 폐지지역의 교육·보건·의료·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7. 폐지지역의 도로·항만·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 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환경보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①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역활성화 사업 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 제 진흥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경 제 활성화 지원 사업(이하 "지역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 연구 · 평가

- 2.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에 대한 지원
- 3. 대체산업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육성
- 4. 대체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 5. 지역에 특화된 산업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
- 6. 그 밖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주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역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자의 출연금으로 하되, 필요한 자금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지역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이외의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 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의제) 폐지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로 본다.
-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역개발계획(「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말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환경보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한다.
- 제10조(신·재생에너지 등 우선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노력하여야 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폐지지역대체산업으로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의 관련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다.
- 제12조(고용안정지원 등) ① 국가는 폐지지역에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우선 실시함에 있어 대체산업 사업장 전환배치·전직, 실직 시 생계 및 주거 지원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원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 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 역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4.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 제1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에 사용한다.
 -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주민과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 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 2.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대체산업 사업장 전환배치·전직, 실직 시 생계 및 주거 지원비 지원
 - 3.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 4.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 5.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
 -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7.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8.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주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화를 둔다.
 -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대체산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거주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관련사업자가 대체산업으로 원활하게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경영자금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 이자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7조(공공시설 등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항만·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폐지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학교·병원 및 관광·숙박 ·체육 및 문화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제18조(지역주민 우선고용 등) ①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

- 업 또는 지역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폐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우선 고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업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폐지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19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또는 폐지지역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 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